

2. 관련 통지사항

항 목	내 용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	2025.04.15.
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	대출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제7조제3항의1[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], 개인금융채권의 이자 또는 원리금 미납
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	대출금의 상환 의무, 연체이자 부담,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/방법	왜관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(https://wgnacf.nonghyup.com/wgnacf/index.do) 참조
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(단, 대출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제7조제3항의1[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]에 의거하여 대출기한이익이 상실된 기존 대출 전부의 정상화를 조건으로 할시 적용됨)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농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(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재약정,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인하, 이자감면, 담보권 실행 유예 등)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	소 속	전화번호	사무실 주소
하 경 택	왜관농업협동조합	054-970-6524	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20

2025년 04월 01일

발신인 : 왜관농업협동조합 (인)



735012